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4.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8월 6일, 이광희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8월 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2025. 11. 1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6. 3. 24.)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26. 3. 26.)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광희 의원)

현행법상 특수경비업제도는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와 관련된 업무인 특수경비업무를 민간인 신분인 특수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외환위기 이후 공공 부분의 비용 절감을 위한 공기업 경영혁신 방안의 목적으로 청원경찰을 대체하기 위해 특수경비원제도를 도입했음. 하지만 국가중요시설 위해방지 업무 등 업무 특성과 책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경비업에 대한 노동기본권 제한, 불합리한 정년 규정,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

이에 특수경비에 대한 그 업무 특성에 맞는 정년과 임금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부여하며, 근무환경 및 정년제도를 개선하고, 원가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등 국가의 책임 하에 적절한 대우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0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나아정 전문위원)

가.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 중 60세 이상을 삭제

개정안은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 중 60세 이상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1호, 안 제10조의2).

현행 「경비업법」 제2조제3호에서는 경비원을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으로 구분하고 있음. 현행 「경비업법」에서는 일반경비원의 연령상한은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특수경비원에 대해서는 60세 이상을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연령상한을 정하고 있음.

2025년 기준 전체 경비원은 213,180명 중 일반경비원은 197,788명, 특수경비원은 15,392명이 있음. 연령별로 살펴보면, 일반경비원 중 60대 이상은 131,290명으로 66.4%를 차지하고 있으며, 30대 20,423명(10.3%), 50대 18,064명(9.1%) 순임. 특수경비원은 30대 5,293명으로 34.4%를 차지하고 있으며, 40대 3,746명(24.3%), 50대 3,560명(23.1%) 순임.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 제도는 2001년에 처음 도입되었고,¹⁾ 제도 도입 당시에는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를 만 58세 이상인 자로 규정했음. 2009년 경비업법이 개정되면서 특수경비원의 상한연령이 60세로 상향되었음. 2009년 개정안²⁾의 제안이

1) 참고로, 특수경비제도는 공항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과학화·전문화 등 경비기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국가중요시설 경비제도 개선계획”에 따른 것임.

출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병곤, 「경비업법개정법률안 검토보고」 3면, 2000. 12

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1803993), 2009. 3.

유에 따르면,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에 배치되며 유사시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으로서 무기의 적정 사용 및 피탈 방지 등을 위해 일정한 체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연령상한이 58세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특수경비원의 상한연령을 60세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2000년 76세에서 2010년 80.2세로 약 4세가 증가했고, 2020년에는 83.5세로 2010년과 비교하여 약 3세 증가함.

또한, 법원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판결이 선고됨.³⁾

개정안을 통해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 중 60세 이상인 사람을 제외함으로써 60세 이상이어도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에 배치되며 유사시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으로서 무기의 적정 사용 및 피탈 방지 등을 위해 일정한 체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격사유로 연령상한을 삭제하기 보다는 연령상한을 65세 등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특수경비원은 일반경비원과 다르게 국가중요시설 경비 등을 담당하고 무기를 사용하는 만큼, 업무의 특수성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정년을 완전 폐지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평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8. 선고 2017나2877 판결

균 수명 연장·신체적 건강 향상·사회적 추세 등을 고려, 근무 가능 연령을 65세 범위에서 일부 상향하여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임.

나. 특수경비원의 노동쟁의 근거 마련

개정안 제15조제2항은 국가중요시설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수유지업무 범위에서는 쟁의행위를 제한하되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비 업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3항).

현행 「경비업법」 제15조제3항은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동 조항은 특수경비원 제도가 2001년에 처음 도입될 때부터 규정되었음. 동 조항이 도입된 이유는 무기를 휴대한 특수경비원 쟁의행위시 국가중요시설 방호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임.⁴⁾

개정안 제15조제3항 본문에서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 중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내에서는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취지는 국가중요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가중요시설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경비원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4) 행정자치위원회, 「경비업법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7면 경비업법개정법률안에대한수정안 수정이유, 2021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되는 특수경비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특수경비원이 임금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필수유지업무를 기준으로 쟁의행위 허용여부를 정하고 있으며,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비업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규정된 필수유지업무를 통해 특수경비원의 필수유지업무를 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어 보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제1항⁵⁾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⁶⁾에 따른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 중 경비업무에 해당하는 출입·보안관리 업무는 전기사업의 전력거래 부문 중 전력계통 등의 운영을 위한 전산실 출입 보안관리만이 규정되어 있는데, 전기사업 외의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에 대해서도 필수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업무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를 고려하면 개정안 제15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비원의 필수유지업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필수유지업무와 별도로 규정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원의 경비업무 중 필수유지업무가 아닌 업무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가 있을 수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① 이 법에서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별표 1]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제22조의2 관련)

4. 전기사업의 필수유지업무

다. 전력거래 부문의 필수유지업무

3) 전력계통 등의 운영을 위한 전산실 운영(출입 보안관리를 포함한다) 업무

있는지에 대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⁷⁾

이외에도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허용과 관련해서는 특수경비원의 특수경비업무는 국가중요시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업무의 공공성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3일 선고한 2019헌마937 사건에서 특수경비원의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경비업법」 제15조제2항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5인의 재판관은 위헌의견, 4인은 기각의견을 제시하여 위헌결정 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나옴.⁸⁾

경찰청은 국가중요시설 경비의 공공성·중요성, 특수경비 자체가 노동조합법 상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필수유지업무 성격을 지니는 점, 유사한 타 직종인 공무원, 청원경찰, 방위산업체 근로자⁹⁾에 대해서도 쟁의

7)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2023년 3월 23일 선고 2019헌마937 결정(경비업법 제15조제3항 위헌 확인)의 재판관 4인의 기각의견에서는 필수공익사업은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으며(노동조합법 제71조 제2항), 필수유지업무 또한 철도 차량의 운전 업무, 수도시설 긴급복구 등과 같이 주로 해당 사업 자체와 관련된 업무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노동조합법 시행령 제22조의2 별표 1), 이 규정들만으로 특수경비원이 관리하는 국가중요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고 방호혼란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함.

헌법재판소 결정의 재판관 5인 인용의견에서는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가 야기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이나 무기 휴대의 위험성 등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특수경비원의 경우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는 절차적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쟁의행위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간을 제한하거나 비상 상황 발생 시 군경 등 대체 경비인력을 조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 쟁의행위에 관하여 별도의 직권 조정·중재 제도를 두는 방안, 쟁의행위 시 무기 휴대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엄중하게 처벌하는 방안 등과 같이,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덜 제한하면서도 국가중요시설의 안전과 같은 공익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 존재한다고 판시함.

8) 헌법재판소 2023년 3월 23일 선고 2019헌마937 결정

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원경찰법」 제9조의4(쟁의행위의 금지) 청원경찰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다. 특수경비원의 근로조건에 대한 시·도경찰청장의 점검

개정안은 시·도경찰청장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특수경비원 처우에 관한 실태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국가중요시설의 물리적 방호 업무를 특수경비업체에게 위탁할 경우 「근로기준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등을 고려하여 원가를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제3항).

국회토론회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특수경비원의 월 통상임금(기본급,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은 197만원~224만원 수준이고, 상여금 및 연장근로수당 등을 고려하면 249만원~378만원 수준임. 청원경찰의 보수와 비교해보면, 청원경찰은 경력에 따라 월 통상임금이 상승하는 반면 특수경비원은 월 통상임금에 경력이 반영되지 않아 경력이 증가하면 특수경비원의 보수는 청원경찰의 보수보다 낮아짐.¹⁰⁾

개정안 제25조제2항을 통해 시·도경찰청이 특수경비원의 근무 조건을

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②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박현호(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특수경비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방안”, 2024년, 특수경비노동자 근로조건 및 차별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발제자료

동 자료에 따르면 임금에 대한 면접조사에서는 “기본급은 210만원 정도예요. 야간수당, 직무교육수당, 식대 등 포함하면 310만원 정도 되는거죠. 저희가 대근(대체근무)를 많이 하니까 월급이 390만원에서 41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많이 받는다고 하지만, 이건 일을 많이 해서 받는 겁니다. 한달에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을 때가 있어요.”라고 조사됨.

확인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특수경비원의 보수 등 현황 및 해당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특수경비원의 근무조건에 대한 협의 등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입법례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4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정하고 있음.

다만,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¹¹⁾ 「정부조직법」 제44조제1항¹²⁾은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 제25조제2항에 따라 특수경비원의 처우에 관한 실태조사의 주체를 고용노동부로 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근로조건의 기준, 복지후생 등은 고용노동부가 관장하기에, 근로조건 등을 지도·점검하는 행위가 경찰의 권한으로 가능한

1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범죄피해자 보호
4.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5.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6.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7.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8.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12) 「정부조직법」 제44조(고용노동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지, 전문성에 기반하여 적절한 감독이 가능할지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다음으로, 개정안 제25조제3항은 공공기관이 국가중요시설의 물리적 방호 업무를 특수경비업체에 위탁하면서 원가 산정 시 「근로기준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공공부문의 경비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상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2025년 하반기 기준 일급 90,830원)를 적용받고 있음.

개정안에서 원가 산정 시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은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특수경비원은 서비스 종사자(대분류 4)로 분류되어 단순노무종사자(대분류 9)와 분류가 다른 점을 원가 산정시 반영하여, 유사한 직업군과 유사한 수준의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찰청에 따르면, 공공연대노동조합에서는 특수경비원이 통계청 직업분류 상 단순 노무 종사자가 아닌 서비스 종사자로 분류되나, 노임단가 관련 규정에서는 별도 구분 없이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이 적용되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개선을 요구함.

개정안 제25조제3항에서 원가 산정 시 「근로기준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고려하도록 한 것은 공공기관은 특

수경비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¹³⁾ 특수경비업자와 특수경비원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근거 법률이 적용되는 사항임을 명시한 것으로 보임.¹⁴⁾

다만, 법 체계적 측면에서 개정안 제25조제3항의 내용은 공공기관과 특수경비업자 사이의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으로 계약 체결에 따라 경비업자의 의무(제7조)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7조보다 앞 조항에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자구 측면에서 공공기관과 경비업자는 도급 계약을 체결하므로, 개정안 제25조제3항의 위탁을 도급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그리고 「근로기준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¹⁵⁾ 중 계약의 원가 산정에 고려되어야 하는 조항은 「경비업법」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적용될 것이므로, 해당 법률을 명시할 실익이 높은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고, 유사 직종인 청원경찰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는 의견임.

13) 「경비업법」 제7조의2(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 ① 누구든지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방위사업청예규 「원가계산 관리지침」에서는 노무비 원가계산 기준으로 작업시간 기준(제14조), 노무단가의 적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

15) 그리고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해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이 적용됨.

라. 특수경비업자의 책임보험·공제 가입

개정안은 특수경비업자가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 하지 못한 경우 또는 특수경비원이 업무 수행 중 제3자에 대해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제4항).

개정안 제26조제3항을 통해 특수경비업자가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수경비업자의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특수경비업자가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 지급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경비업자로부터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받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험·공제 가입과 관련된 법률안으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021)과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309)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동 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경찰청은 경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 경비대상 또는 제3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특수경비업자의 보험·공제가 입을 명문화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 서범수)

개정안은 특수경비원의 정년 제도 등을 개선하고, 특수경비업자가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수경비원의 정년을 65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없 음

9. 관련위원회 의견 요지

없 음

10.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개정안은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로 65세 이상인 자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10조의2에서는 특수경비원의 당연 퇴직 사유로 65세 이상을 규정하여 특수경비원의 연령 상한을 65세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만을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 시행 당시 근무 중인 특수경비원이 60세 이상인 경우, 현행법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것인지 혹은 개정안에 따라 65세까지 추가적으로 근무가 가능한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의 연령 상한이 적용되는 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안 시행 당시의 재직 중인 자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신설하여 부칙에 두는 수정의견을 경찰청과 협의하여 마련하였음.

[붙임] 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3.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 중 특수경비원의 연령 상한을 폐지하는 것(안 제10조제2항 제1호, 제10조의2)과 관련해서는 특수경비원이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연령 상한을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현행 60세의 연령 상한을 65세로 상향하는 것으로 수정함.

개정안 중 특수경비원이 정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15조제3항) 및 시·도경찰청장이 특수경비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도록 하는 부분(안 제25조제2항·제3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부분들을 현행대로 수정함.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2항제1호 중 “미만인”을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으로 한다.

안 제10조의2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는 나이가 65세가 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65세가 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되고”로 한다.

안 제15조제3항 본문 중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수유지업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필수유지업무 범위 내에서는”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로 하고, “제한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삭제한다.

안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각각 삭제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18세 <u>미만</u> 이거나 <u>60세 이상인</u>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2. ~ 5. (생략) ③ (생략)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u>미만인</u> ----- ----- ----- -- 2.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 -----. 1. ----- <u>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u> ----- ----- ----- -- 2. ~ 5.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제10조의2(특수경비원의 당연 퇴직) 특수경비원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u>다만, 제10조제2항제1호는 나이가 60세가 되어 퇴</u>	제10조의2(특수경비원의 당연 퇴직) ----- ----- ----- ----- ----- -----. <u>다만,</u> ----- ----- -----	제10조의2(특수경비원의 당연 퇴직) ----- ----- ----- ----- ----- -----. <u>다만, 제10조제2항제1호는 나이가 65세가 되어</u>

③ <u>특수경비원은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서 신설></u> ④ (생략) 제25조(보안지도·점검 등) (생략) <u><신설></u>	③ <u>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수유지업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필수유지업무 범위 내에서는 쟁의행위를 제한한다. 다만,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비업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u>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보안지도·점검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시·도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특수경비원의</u>	③ <u>특수경비원은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서 삭제></u> ④ (개정안과 같음) 제25조(보안지도·점검 등) (개정안과 같음) <u><삭제></u>
---	---	---

<u><신 설></u>	<u>보수 수준, 지급실</u> <u>태, 근로조건 등</u> <u>처우에 관한 지도</u> <u>· 점검을 실시하여</u> <u>야 하고, 필요한</u> <u>경우 관계기관에</u> <u>특수경비원의 처우</u> <u>에 관한 실태조사</u> <u>를 요청할 수 있</u> <u>다.</u> ③ <u>공공기관이 국</u> <u>가중요시설의 물리</u> <u>적 방호 업무를 특</u> <u>수경비업체에게 위</u> <u>탁할 경우, 「근로</u> <u>기준법」과 「국가</u> <u>를 당사자로 하는</u> <u>계약에 관한 법</u> <u>률」, 통계청의 한</u> <u>국표준직업분류 등</u> <u>을 고려하여 원가</u> <u>를 산정하여야 한</u> <u>다.</u>	<u><삭 제></u>
---------------------------	---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60세”를 “65세”로 한다.

제10조의2 단서 중 “60세가”를 각각 “65세가”로 한다.

제2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수경비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가입대상, 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 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18세 미만이거나 <u>60세</u> 이상 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2. ~ 5. (생 략) ③ (생 략)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u>65세</u> ----- ----- 2.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특수경비원의 당연 퇴 직) 특수경비원이 제10조제2항 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다 만, 제10조제2항제1호는 나이가 <u>60세가</u> 되어 퇴직하는 경우에 는 <u>60세가</u> 된 날이 1월부터 6 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 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되 고, 제10조제2항제4호는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	제10조의2(특수경비원의 당연 퇴 직) ----- ----- -----. ----- <u>65세가</u> ----- --- <u>65세가</u> ----- ----- ----- ----- ----- ----- ----- -----

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26조(손해배상 등) ① . ② (생략) <u><신설></u> <u><신설></u>	----- ----- ----- ----- -----. 제26조(손해배상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특수경비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u> <u>④ 제3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가입대상, 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